

山林開發法(案) 및 山林開發 金庫法(案)에 對하여

朴泰植 · 李應來 · 沈鍾燮

[韓國林學會誌 第 14 号 : 45 ~ 48, 1972]

On the Forest Development Act(a Proposal) and Law of Forest Development Fund (a Proposal)

Tai Sik Park · Eung Rae Lee · Chong Supp Shim

[Jour . of Kor . For . Soci . , No , 14 ; 45 ~ 48 , 1972]

要 旨

1. 전국의 산림은 산림개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권역으로 구분한다.

가. 용재림 개발권

주요산맥을 연하는 오지대(奧地帶)

나. 풍치림 개발권

고속도변(좌우 4 km범위) 도시주변 공원지구, 기타 토지대

다. 농용림 개발권

전 가, 나 속에 속하지 않는 야산지대

2. 3대 개발권별로 우선 개발할 지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

3. 개발지역을 지정하는 미리 산림의 용도들 구분하여 시정 고시한다.

4. 개발지역내의 산주는 개발우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진다.

5. 산주가 개발의무 불이행시는 대집행(代執行)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6. 대집행(代執行)은

가. 산림개발공단

나.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산림조합(산림, 산림포함)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13. 개발지역 내에서의 확정된 개발계획은 기존 영림 계획에 우선한다.

14. 개발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수속절차는 이법으로 일원화 한다.

7. 산주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비용변상이 없는 한 이 양자간에는 수익(收益)분배를 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장기 보장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다.

8. 산림개발의 중추적 대집행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시범적이며, 집단적인 산림개발과 임도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산림개발 공단을 설립한다.

9. 장기처리와 용자지원을 위하여 산림개발 기금을 200억원 한도로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을 전담할 산림개발 금고를 별도 법률로서 설립한다.

10. 산림개발 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국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

나. 임목의 벌채자 및 원목 수입이용 가공 판매자에 과하는 기금부담금

다. 매년 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재원

11. 개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상속세, 양여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등 세제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2. 개발지역내에서의 산림도벌 무허가벌채등 산림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